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월 일	2022. 6.

법제처 심사 후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소용 차량(진개덤프) 및 탱크로리·살수차 대폐차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폐차 기간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본 규정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를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살수용”으로, “청소용 차량, 살수용”을 “청소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제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 4. (생략)

<신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 3.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제11조(대폐차 신고 기한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3. · 4. (현행과 같음)

5.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 · 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 · 우드칩운반용 차량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 덤프형 ·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 · 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대폐차 신고 기한 등) ①

-----.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관할협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3개월의 대차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작기간 장기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위·수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여부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 6개월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6개월-----

-----.

③ (현행과 같음)